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27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포상금 지급 상한액 등 규정	3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1. 24.
- (3) 회 부 일 : 2025. 1.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포상금 지급 상한액 등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9조의3 신설),

감독기관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포상금은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 (안 제90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9조의3(비실명 대리신고)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그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감독기관”으로 본다.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	제90조(포상금) 감독기관의 장은 제23

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조----- ----- ----- ----- ----- -----고발한 자에게----- ----- ----- ----- -----이 경우 포상금은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 또는 고발 당한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0조에 따르면 현행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¹⁾,

현행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1) 「약사법」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급됨²⁾.

□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명 신고의 부담을 경감하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며, 감독기관의 장이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현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³⁾,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2) 「약사법 시행령」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90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⁴⁾, 현행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⁵⁾ 이를 직접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감독기관 등에게 이첩 또는 송부되므로⁶⁾, 개정안과 같이 직접 감독기관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게 할 경우 감독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단속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현행법 제24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현행법 제50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바⁷⁾,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둔 것은 신고자 보호에 전문성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일원화된 관리 측면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총 3건)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법률로서 비실명 대리신고 시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⁸⁾, 이외의 개별법에서 비실명 대리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현행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단속하여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⁹⁾, 현행법 위반사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는 중앙부처가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업무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감독기관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¹⁰⁾ 감독기관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약사법 시행령」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90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사항 중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약사회)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포상금 제도가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포상금 지급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무차별적인 신고 및 신고 무마를 대가로 한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 약사법령 위반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제도를 복수의 법률에 중복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무인데, 포상금 지급을 식약처 등 중앙부처 예산으로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감독기관과 포상금 지급기관 간 괴리가 발생하여 적절하지 않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4